

장차법 법제위 수정안(2006.8.5 회의제출용)

제2장 차별금지

조항	국회 상정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제1절 고용	제7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된 장애인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채용·승진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도구의 개발 및 지원, 시험기간의 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후에 사용자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기구의 설립을 지	제7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채용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채용·승진·교육·훈련·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표기구의 건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	제7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채용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채용·승진·교육·훈련·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원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표기구의 건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적절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4.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5.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조 및 필요한 환경 제공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4.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5.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조 및 필요한 환경 제공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4.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5.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6.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7.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8.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6.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7.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6.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7.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0조(차별금지) ①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 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 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 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	제10조(차별금지) ①교육시설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시설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시설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시설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시설장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시설장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제10조(차별금지) ①교육시설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시설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시설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시설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시설장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도를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교육시설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포함한 재활보조공학장비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2.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3.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이 아닌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5. 학교시설장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을 재학중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교육시설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포함한 재활보조공학장비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2.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3.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이 아닌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5. 학교시설장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을 재학중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당해 교육시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6. 교육기관 및 그의 지휘·관리·감독 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당해 교육 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당해 교육시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하여야 한다.
제3절 건축 및 시설의 이 용과 접근	제12조(차별금지) ①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	제12조(차별금지) ①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	제3절 건축 및 교통수단의 이용과 접근 제12조(차별금지) ①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①교통행정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주 및 운송사업주는 장애인보조견 및 보조기구의 출입을 제한·거부하거나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주관기관 및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	---	--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 의 이용	제13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건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자가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의 개발, 연구,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자동차의 구입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차별금지) ①교통행정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행정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건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과 통합)

	⑤장애인등은 대중교통이용 및 자가운전이 어려울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상응한 비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차별금지) ①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차별금지) ①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차별금지) ①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⑤장애인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구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	제7절 문화·예술·체육 제15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이용 및 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과 통합)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9절 이후는 여성팀에서 하기로 했으며, 5절과 9절은 김철환 법제위원이 담당하기로 함.